

1. 개정이유

건설기술인에게 발급하는 건설기술경력증의 사용성 및 편의성 도모를 위해 건설기술경력증을 모바일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대상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추가, 위반행위 회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부과차수의 누적 적용에 따른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바일 형태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안 제18조제3항 단서)

건설기술경력증의 사용성 및 편의제공을 위해 건설기술인의 요청 시 모바일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안 제63조의2제1호)

건설기술인이 국외 경력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해 경력관리수탁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업무정지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1)

위반행위 회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 적용 시 위반행위 처분일, 처

분차수 등에 대한 적용 기준 미비로 혼선이 야기되어 건설기술인 업무 정지에 대한 행정처분 일반기준 명확히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0. ~ 11.)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모바일 형태로 구분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63조의2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별표 1 제1호가목 전단 중 “기준”을 “가중된 처분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부터 별지 제16호서식 까지,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소			
	신기술 활용지위 []개발자 []사용협약자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자 []기타			
대상 신기술	지정번호			
	기술범위(신기술 지정증서에 명시된대로 작성)			
용역내용	용역명			
	용역기간		용역계약금액	
	신기술 설계 적용금액(천원)		지분율(%) 반영 설계 적용금액(천원)	
공사내용	공사명			
	계약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① 발주형태
	해당 공사 총 계약금액(천원)		② 해당 공사 신기술 적용 금액(천원)	
	해당 연도 총 계약금액(천원)		③ 해당 연도 신기술 적용 금액(천원)	
	해당 연도 신기술 기성실적(천원)		지분율(%) 반영 기성실적(천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발주청 (수급인)	상호 또는 법인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인)	
	주소 및 연락처 (우) (전화: , 팩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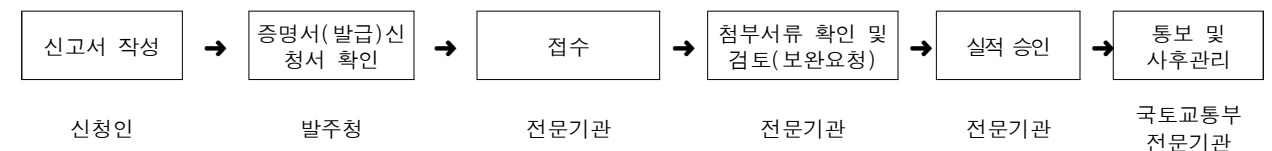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기술을 활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유의사항

- ①발주형태: 일반(1), 지명(2), 제한(3), 수의(4), 대안입찰(5), 설계시공일괄입찰(6), BTL(7), 민간공사(8), 기타(9) 중 해당되는 형태를 찾아 번호를 적습니다.
- ②, ③의 신기술 적용금액은 신기술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 실적 증명은 발주청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계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를 받기 위한 실적신고는 공사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건설사업관리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를 받기 위한 실적신고는 용역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

※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사진 (3.5cm×4.5cm) 또는 사진인쇄	
		한자			
		영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국적		
	주소				
군복무	① 기간 ~	구분 []미필 []면제 []기타			
② 직무분야	※ ②란 직무분야의 예: 토목, 건축, 기계, 안전관리, 환경 등 영 제4조 별표 1의 제3호의 직무분야를 적습니다.				
③ 학력	재학기간	졸업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 . . ~ . . .				
	. . . ~ . . .				
④ 국가 기술자격	합격일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 . .				
	. . .				
⑤ 근무처	회사명	근무기간	회사명	근무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접수 담당자 확인사항	수수료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외 경력확인서[발주자,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합니다] 2. 졸업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3. 교육·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송부되는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는 제외하며,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발주청이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훈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5.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6. 증명사진(3.5cm×4.5cm) 1장(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에 사진을 인쇄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다음 각 목의 서류(신고·변경 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

유의사항

-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신고 시 신고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인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국가기술자격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란의 군복무기간은 자격대여 및 경력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것으로 실제 군복무기간을 적으셔야 합니다.
2. ②란의 직무 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 중 어느 하나를 적습니다.(적은 직무분야는 향후 건설기술인 통계 등에 활용됩니다)
3. ③란의 학력사항에 최종 학력과 건설기술 관련 학력을 적습니다.
4. ④란의 국가기술자격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에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을 적습니다.
5. ⑤란의 근무처는 경력확인서를 첨부하는 업체를 적습니다.

구분	인사부서	사업부서
부서명		
담당자	(인)	(인)
연락처		
발급번호		

경력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인적사항	①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주소		
소속회사	③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④ 건설업종(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⑤ 입사일	⑥ 퇴사일	전화번호

기술경력

연 번	⑦ 참여기간		⑧ 참여사업명				⑨ 발주자(청)	
	⑩ 직무분야	⑪ 전문분야	⑫ 공사종류	⑬ 담당업무	⑭ 직위	⑮ 책임정도	⑯ 공법	
	⑰ 공사(용역)개요(70자 이내 빈칸 포함)				⑱ 공사(용역)금액 (백만원)		⑲ 착공일	⑳ 준공일(예정일)
	. . . ~ . . .							
	. . . ~ . . .							

위와 같이 건설기술인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인·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

직인

유의사항

- 기술경력을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려는 경우 발주자나 인·허가기관 직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사신고 또는 일반적인 경력신고는 사용자(대표자) 직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기술인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을 말합니다)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입·퇴사일을 신고하는 경우 4대 보험 자료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수의 경력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술경력만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장 이상은 각 장에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간인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 대리인 신고 시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1. ①란의 (서명 또는 인)은 건설기술인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②란의 주소가 이미 신고한 주소에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주소를 적고 그 뒤에 (변경요청)이라고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③란의 회사명은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상호가 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상호를 적고 그 뒤에 (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 중 어느 하나를 적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④란의 건설업종(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은 소속 회사가 소지하고 있는 건설 관련 업종(예: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도장공사업·엔지니어링사업 등)과 해당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적으면 되며, 건설업종을 1개 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표업종을 적으면 됩니다.
5. ⑤란의 입사일은 소속 회사의 입사일을 적으면 됩니다.
6. ⑥란의 퇴사일은 소속 회사의 퇴사일을 적으면 되며, 현재 근무 중인 경우 “근무 중”으로 적으면 됩니다.
7. 가. ⑦란의 참여기간은 해당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이하 “건설공사 등”이라 한다)에 실제 참여한 기간을 적으며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 등의 착공일과 준공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적으면 됩니다. 다만, 착공일 이전 수행한 건설공사 업무(계획·조사 등) 또는 준공일 이후 수행한 건설공사 업무(유지·관리 등)는 기간 및 담당업무를 분리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나. 시공·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품질관리자·감리/상주 등 현장에 상주해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같은 기간에는 다른 기술경력 과 중복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 해당 건설공사 등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종료일에 “근무 중”으로 표기(이 경우 경력확인서 발행일까지 기술경력은 인정받게 됩니다)하며 이미 종료일을 “근무 중”으로 신고한 기술경력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경력사항을 적은 후 종료일을 적어야(참여기간 외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합니다.
작성 예) 201x년 1월 25일 시작신고
참여기간: 201x. 1. 10. ~ 근무 중(이 경우 건설공사 참여일인 1월 10일부터 경력신고일인 1월 25일까지 경력 인정)
201x년 12월 25일 종료신고
참여기간: 201x. 1. 10. ~ 201x.12. 20.(이 경우 시작신고일 다음날인 1월 26일부터 해당 건설공사 등이 종료된 12월 20일까지 경력 추가인정)
8. ⑧란의 참여사업명은 건설기술인이 실제 참여한 건설공사 등의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에 표기된 사업명을 정확히 적으면 됩니다.
9. ⑨란의 발주자(청)는 해당 건설공사 등을 발주한 기관명·업체명 또는 개인명을 적고 하도급을 받은 경우 발주자 및 원도급자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10. 가. ⑩란 및 ⑪란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건설기술인이 실제 수행한 직무 및 전문분야(선택한 직무분야 범위내의 전문분야를 선택하여 적어야 합니다)를 선택하여 적으면 됩니다.
나. ⑪란의 전문분야는 구체적인 참여사업명이 없는 경력[예: 본사(건축실) 등]기간에는 적을 수 없습니다.
11. ⑫란의 공사종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이하 “등급인정기준고시”라 한다)의 건설공사 종류 또는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따라 적고, 건설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고시의 건설공사의 종류 중 대분류 및 소분류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12. ⑬란의 담당업무는 등급인정기준고시의 건설공사업무 중 하나를 적으면 됩니다.
13. ⑭란의 직위는 해당 건설공사 등에 참여할 당시의 직위를 적어야 합니다.
14. ⑮란의 책임정도는 건설공사 등에 참여한 책임정도에 따라 등급인정기준고시의 책임정도 중 하나를 적으면 됩니다. 다만, 책임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빈칸으로 남겨 두시면 됩니다.
15. ⑯란의 공법은 해당 건설공사 등에 적용된 공법을 적으면 됩니다.
16. ⑰란의 공사(용역)개요는 건설기술인이 참여한 건설공사 등의 공사규모 등을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하도급공사인 경우 직접 시공한 하급 공사분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예) 공사(용역)개요 : 도로확장 L=00Km, B=0m(0차선), 사장교 : L=00m, B=0m, 터널 0개소 : L=0Km, B=0m 등
※ 공사(용역)개요 기재는 주요 공종만 최대 70자 이내(빈칸 포함)로 작성해야 합니다.
17. ⑱란의 공사(용역)금액은 건설기술인이 참여한 건설공사 등의 사업비를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하도급공사인 경우 직접 시공한 하급 공사분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예) 공사(용역)금액: 500백만원
18. ⑲란의 착공일 및 ⑳란의 준공일(예정일)은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의 용역기간을 적으면 됩니다.
19. <삭제>
20. 인사부서란은 임명대장 또는 인사기록카드 등을 근거로 사업부서 재직기간을 확인하고 직인을 날인한 사람의 부서명, 담당자 성명(인), 연락처를 적으면 됩니다.
21. 사업부서란은 착수계·준공계·공사대장·설계도서·감독명령부 또는 업무분장 등을 근거로 기술경력 및 참여기간을 확인한 사람이 부서명, 담당자 성명(인), 연락처를 적으면 됩니다.
22. 발급번호란은 경력확인서를 발급하는 기관(업체)에서 경력확인서 발급 시 관리하는 번호를 적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2 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에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구분	인사부서	사업부서
부서명		
담당자	(인)	(인)
연락처		
발급번호		

국외경력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인적사항	①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주소		
소속회사	③ 회사명	대표자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④ 해외건설업종(등록번호)
	⑤ 입사일	⑥ 퇴사일	전화번호
국외 기술경력	⑦ 참여기간	⑧ 참여사업명	
	⑨ 발주국	⑩ 발주자	[]국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기타
	⑪ 직무분야	⑫ 전문분야	
	⑬ 담당업무(책임정도)		
	⑭ 공사종류(주 공종)	⑮ 직위	⑯ 공법
	⑰ 공사지역(국가명)	⑱ 착공일	⑲ 준공일(예정일)
	⑳ 공사(용역)개요(70자 이내, 빈칸 포함)		㉑ 공사(용역)금액(백만원)

위와 같이 건설기술인에 대한 국외공사(용역)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

직인

첨부서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서식) 또는 국외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건설기술인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을 말합니다)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입·퇴사일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4대 보험 자료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다수의 국외 경력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외기술경력만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장 이상은 각 장에 사용자(대표자) 확인(간인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3. 국외 경력확인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을 받으면 외국어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대리인 신고 시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5.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	--------------	------	-----

작성방법

1. ①란의 (서명 또는 인)은 건설기술인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타인이 또는 날인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②란의 주소가 이미 신고한 주소에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주소를 적고 그 뒤에 (변경요청)이라고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③란의 회사명은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명을 정확히 적어야 하며 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상호를 적고 그 뒤에(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 중 어느 하나를 적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④란의 해외건설업종(등록번호)는 소속회사가 소지하고 있는 해외건설관련업(예: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산업설비공사업·조경공사업·전문건설업·건설엔지니어링업 등) 해당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적으면 되며, 건설업종을 1개 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표업을 적으면 됩니다.
 5. ⑤란의 입사일은 소속회사의 입사일을 적으면 됩니다.
 6. ⑥란의 퇴사일은 소속 회사의 퇴사일을 적으면 되고, 현재 근무 중인 경우에는 “근무 중”으로 적으면 됩니다.
 7. 가. ⑦란의 참여기간은 해외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이하 “해외건설공사 등”이라 한다)에 실제 참여한 기간을 적으며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된 계약명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착공일과 준공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기재하시며 됩니다. 다만, 착공일 이전 수행한 건설공사업무(계획·조사 등) 또는 준공일 이후 수행한 건설공사 업무(유지관리 등)는 기간 및 담당업무를 분리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나. 시공 등 해외현장에 상주해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같은 기간에는 타 기술경력과 중복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 다. 해당 해외건설공사 등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종료일에 “근무 중”으로 표기(이 경우 경력확인서 발행일까지 기술경력은 인정받게 됩니다)하며, 이미 종료일을 “근무 중”으로 신고한 기술경력을 종료할 때에는 해당 경력사항을 적은 후 종료일을 적어(참여기간 외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야 합니다.
- 작성 예) 201x년 1월 25일 시작신고
참여기간: 201x. 1. 10. ~ 근무 중(이 경우 해외건설공사 참여일인 1월 10일부터 경력신고일인 1월 25일까지 경력 인정)
201x년 12월 25일 종료신고
참여기간: 201x. 1. 10. ~ 201x.12. 20.(이 경우 시작신고일 다음날인 1월 26일부터 해당 해외건설공사 등이 종료된 12월 20일까지 경력 추가인정)
8. ⑧란의 참여사업명은 건설기술인이 실제 참여한 해외건설공사 등의 계약명 또는 실적증명서(「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된 계약명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 제출된 실적증명서를 말합니다)에 표기된 공사명을 적으면 됩니다.
 9. ⑨란의 발주국은 해당 해외건설공사 등을 발주한 발주처(기관)가 소속된 국가명을 적으면 됩니다.
 10. ⑩란의 발주자는 해당 해외건설공사 등을 발주한 기관명을 기재하시고 기관의 성격에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11. ⑪란 및 ⑫란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건설기술인이 실제 수행한 직무 및 전문분야(선택한 직무분야 범위내의 전문분야를 선택하여 적어야 합니다)를 선택하여 적으면 됩니다.
 12. ⑬란의 담당업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이하 “등급인정기준고시”라 한다)를 참고하여 적으면 됩니다.
 13. ⑭란의 공사종류(주 공종)는 등급인정기준고시의 건설공사의 종류 또는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따라 적고, (주 공종)은 해당 해외건설공사에 참여했던 주요공종을 적으면 됩니다.
- 작성 예) 공사종류: 공항(활주로)
14. ⑮란의 직위는 해당 해외건설공사 등에 참여할 당시의 직위를 적으면 됩니다.
 15. ⑯란의 공법은 해당 건설공사 등에 적용된 공법을 적으면 됩니다.
 16. ⑰란의 공사지역(국가명)은 해당 해외건설공사 등이 실제 이루어진 국가명과 시(市)까지 적으면 됩니다.
 17. ⑱란의 착공일 및 ⑲란의 준공일(예정일)은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의 용역기간을 적으면 됩니다.
 18. ⑳란의 공사(용역)개요는 건설기술인이 참여한 해외건설공사의 공사개요를 70자 이내(빈칸 포함)에서 간략히 적으면 됩니다.
- 작성예) 해외공사(용역)개요: 본 공사는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의 활주로 증설 공사로 주 활주로 2곳(총 1.4km)을 연장하였음
19. ㉑란의 공사(용역)금액은 건설기술인이 참여한 해외건설공사 등의 사업비를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하도급 공사인 경우 직접 시공한 하도급 공사분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20. 인사부서란은 임명대장 또는 인사기록카드 등을 근거로 사업부서 재직기간을 확인하고 직인을 날인한 사람의 부서명, 담당자 성명(인), 연락처를 적으면 됩니다.
 21. 사업부서란은 착수계·준공계·공사대장·설계도서·감독명령부 또는 업무분장 등을 근거로 기술경력 및 참여기간을 확인한 사람이 부서명, 담당자 성명(인), 연락처를 적으면 됩니다.
 22. 발급번호란은 경력확인서를 발급하는 기관(업체)에서 경력확인서 발급 시 관리하는 번호를 적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2 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에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

※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종전 소속회사	회사명(대표자)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건설업종(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입사일		퇴사일		전화번호				
현재 소속회사	회사명(대표자)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건설업종(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입사일					전화번호			

기술경력							
참여기간		참여사업명				발주자(청)	
직무분야	전문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	직위	책임정도	공법	
공사(용역)개요(70자 이내 빈칸 포함)				공사(용역)금액(백만원)		착공일	준공일 (예정일)
. . . ~ .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본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접수 담당자 확인사항	수수료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 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외경력확인서[발주자,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합니다] 2.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다음 각 목의 서류(신고·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에 따른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인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국가기술자격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신고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속회사 및 기술경력 작성방법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3. 대리인이 신고 시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건설기술경력증

수탁기관

140mm×180mm(OCR 용지 105g/㎡)

건설기술경력증을 모바일로 발급하는 경우 규격은 모바일 크기에 따라 조정

유의사항

1. 건설기술경력증은 항상 휴대해야 하며, 관계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시해야 합니다.
2. 건설기술경력증의 갱신사유(작성란의 부족 등) 또는 재발급사유(훼손·분실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조속히 갱신 받거나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3.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건설기술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사용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건설기술경력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5.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이 제4호에 따라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 및 별표 11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건설기술경력증을 모바일로 발급 받은 경우 조회일자에 따라 표기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경력증

증명사진

(3.5cm×4.5cm)

발급번호

○○○○

성명

○○○

발급일

○○○○

생년월일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합니다.

수탁기관의 장 인

조회일자: 년 월 일(모바일에 한함)

[] 신규 [] 모바일 [] 갱신 [] 재발급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소속회사	회사명		전화번호	
기술등급	업무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 설계·시공			
	[] 건설사업관리		해당없음	
	[] 품질관리	해당없음	해당없음	
사유				
발급 번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신규·모바일·갱신·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사진(3.5cm×4.5cm) 1장	수수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

유의사항

-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신청·수령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 건설기술경력증을 모바일로 발급 받은 경우 조회일자에 따라 표기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리인 (경력증수령)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	-----------------	------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3쪽 중 제1쪽)

관리번호		발급번호				
인적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등급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직무분야	전문분야				
국가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학력	졸업일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교육훈련	교육기간	과정명		교육기관명		교육인정여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1)나), 2)나)(1)·(2) 및 3)나)에 따른 의무교육 이수 시간 -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계속교육: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계속교육: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계속교육:					
상훈	수여일	수여기관		종류 및 근거		
벌점 및 제재사항	벌점					
	제재일	종류 및 제재기간		근거	제재기관	
근무처	근무기간	상호		근무기간	상호	
	~			~		
	~			~		
	~			~		
	~			~		
	~			~		
	~			~		
	~			~		

성명 :

(3쪽 중 제2쪽)

1. 기술경력

참여기간 (인정일)	사업명	공사 종류	직무 분야	담당 업무	비고
	발주자	공법	전문 분야	직위	
	공사(용역)개요		책임 정도	공사(용역)금액 (백만원)	
~					
~					
~					
~					
~					
~					
~					
~					
~					

성명 :

(3쪽 중 제3쪽)

2.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경력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통보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감리용역 참여 경력만 해당합니다.

참여기간 (인정일)	사업명	공사 종류	직무 분야	담당 업무	비고
	발주자	공법	전문 분야	직위	
	공사(용역)개요		책임 정도	공사(용역)금액 (백만원)	
~					
~					
~					
~					
~					

※ 공사(용역)개요 및 공사(용역)금액은 발주청(인·허가기관)의 확인으로 신고된 사항만을 표기하며, 미신고된 란은 생략 가능합니다.

-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기간: 일
 - 상주: 일[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일,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일]
 - 기술지원: 일[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일,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일]
- 감리 업무 수행기간: 일
 - 상주: 일[공동주택: 일, 다중이용시설: 일]
 - 기술지원: 일[공동주택: 일, 다중이용시설: 일]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안전관리 업무 수행기간: 일
- ※ 업무 수행 중복기간은 건수로 나누어 산정하여 기록함
-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최근 1년간) 용역 완성비율: %(참여 건수: 건, 완료 건수: 건)

3. 배치금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철수한 경우만 기재)

용역명	근무형태	직책	근무기간	배치금지 기간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illegible]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건설기술인 보유현황을 확인합니다.

이
제
의

수탁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건설기술인의 신고·변경신고: 다음 각 목의 서류(신고·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나. (생략)

<신설>

2. (생략)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신설>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 (현행과 같음)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
----- 가중된 처분기준 -----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된 처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다. -----

-----.

라. -----

수 없다. 1) ~ 2) (생략) 2.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